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악4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 정 희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 저공해 조치의 무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시킨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가 개정되었으며 2020년 4월 3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법 명령 및 근거조항 등을 조문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뿐만이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6개월 이내로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조기 폐차한 건설기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 문제에 있어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